

세월호 특조위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답변

1.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귀 정당에서는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부터 특조위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는 일방적 특별법 시행령을 작성하여 특조위가 활동을 할 수 없게 시행일로부터 시행령 공포일까지 6개월 남짓을 공전해왔음
-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및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과 예산이 배정된 시점인 2015년 8월 4일을 활동 시점으로 봐야함이 정당하다고 봄
- 또한, 정부가 특별법의 상충되는 문제점을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처사를 자행하며 실질적인 특조위의 활동을 지연 및 방해한 점(사무처 구성 및 예산 배정 등)을 들어 우리당은 그런 문제점을 담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상임위에 회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월 19일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특검)를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특별법에 명시된 특검에 대한 요청은 특조위의 고위 권한으로 특조위의 판단에 따라 이를 필요시 국회에 의결 요청이 있으면 여야는 이를 수용해야 함이 마땅한 처사라고 봄

3.현재 해양수산부는 7월 중으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선체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인데, 귀 정당에서는 세월호 선체 조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주체는 정부인 해수부가 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활동은 특조위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 지난 농해수위 예산 소위에서 해수부 차관은 선체 조사에 대한 특조위 활동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4.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선체 인양 후 선체 조사가 마무리될 때(‘세월호 특조위의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까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우리당은 성역없는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앞서 밝힌바와 같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한 개정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가족협의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적어도 세월호 선체 인양이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의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함에 동의함